

일본	4 월 수출현안/ 수입제도 모니터링
----	---------------------

I수입제도 변경사항 / 현안 사안

1. 사전검사제도

- 일본식품위생법(후생성 고지 제 119호)에 따라 제도 시행중인 일본 수입가공식품 사전확인제도의 확대운용을 위한 제도설명회 aT 본사(양재동)에서 개최(5.8)
 - 설명회에는 후생노동성 담당자, 농림축산식품부, 식약처 등 관계 기관 참석
- 한국식품은 현재 감지 4업체, 62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, 동제도 활용 시 식품 정기의무검사 주기 완화(1년→3년) 및 통관시간 단축 등의 효과

일본 수입가공식품 사전확인제도
일본식품위생법(후생성고지 제119호)에 의거, 일본의 식품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함이 확인된 수입가공식품을 후생노동성에 사전에 등록하고, 수입업자가 수입시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, 일본 일선통관검역소에서 신속하게 수입식품반출서를 교부하는 제도

- 시사점
 - aT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협력 및 도쿄 aT센터 업무연계를 통해 국내 수출업체의 관련 제도 이용을 위한 제반 지원을 실시할 예정으로, 이를 통한 한국산 가공식품 수출여건개선 전망
- ※ 제도 관련 문의 : 본사 수출전략처 식품수출팀 한만우 차장(02-6300-1371)/ 도쿄aT 김형표 차장(+81-3-5367-6672)

II통관시 문제 사례 (‘14년 4월)

월	품목명	제조자	부적합내용	수입자 명	조치상황
4월	아케가루 및 함신로 (고춧가루)	Y사	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성 물질이 있으므로, 정해진 양을 초과한 잔류농약 검출(지페노코나졸 0.03ppm)	주식회사 C	폐기, 전량회수

- 시사점
 - 고춧가루
 - : 지페노코나졸 성분의 일본 기준치 상향조정으로 인한 기준치 위반된 사례로 일본 수출 전 반드시 한국 내 인증검사기관에서 해당 잔류농약 검사 후 수출토록 관리 필요 ※ 1월에도 동일한 사유로 위반된 사례 발생
 - : 한국산 고춧가루의 경우, 100% 명령검사 대상으로 300건 이상의 미검출 실적이 없으면 명령검사 철회가 안 되므로, 수출업체 및 지자체의 각별한 주의 필요
 - : 동 농약성분의 기준치 상향조정을 일본정부에 신청한 상태이나 기준치 확정까지는 1년 이상의 장기간 소요 예정으로 완료시까지 별도 관리가 필요함